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전 략 사 령 부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신원식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략사령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도화되고 있는 北 핵·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120대 국정과제 (104. 北 핵·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)와 국방혁신 4.0 기본계획 상 전략사령부 창설 ('24년) 계획에 따라,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부대의 설치와 임무,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, 정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전략사령부령안

제1조 (설치) 적의 핵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둔다.

제2조 (임무) 전략사령부(이하 “사령부”라 한다)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핵·대량살상무기 공격 억제 및 대응작전 계획수립·준비·시행·통제
2. 한미 확장억제 시행 관련 군사분야 대미협력
3. 핵·대량살상무기 공격 억제 및 대응작전 등을 위한 우주·사이버·전자 기스펙트럼 능력 통합운용
4. 전략적 능력에 대한 합동전투발전
5. 그 밖에 핵·대량살상무기 공격 억제 및 대응작전과 관련된 사항

제3조 (사령관 등의 임명)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.

②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.

제4조 (사령관 등의 직무)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, 합동참모의장이 지정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를 작전통제한다.

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,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·통제 및 감독하며,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부서와 부대의 설치)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, 부대의 설치·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제6조 (정원)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4. 전략사령부

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전략사령관

③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항 중 “정보본부·작전본부·전략기획본부·군사지원본부 및
핵·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”를 “정보본부·작전본부·전략기획본부 및
군사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1조의2를 삭제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6579